

[별표 1]

주요기술경력 신고 범위 등(제11조 관련)

구분	업무분야	신고 범위	제출 서류	접수 기관
소방시설 설계업	설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 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설계업체에 선임되어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1. 선·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협회
소방시설 공사업	시공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 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선임되어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소방기술자로 참여한 사업	1. 선·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공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배치통보 의무화(2009.6.1)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협회
소방공사 감리업	감리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 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공사감리업체에 선임되어 법 제17조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참여한 사업	1. 선·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공사 감리자 지정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규칙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의무화(2004.7.7)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협회
소방시설 관리업	점검 또는 유지관리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 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선임되어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로 참여한 사업	1. 선·해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약서 사본 또는 점검·유지관리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리 협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감독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 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소속되어 소방공사감독관으로 참여한 사업	1. 계약서 사본 또는 공사감독 이행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협회
공기업.	설계	경력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이 주요	1. 계약서·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설계·감리 이행 참여사실	협회

준정부기관 ·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감리	기술경력을 신고하려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자체 기술인력으로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사업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감리의 경우 규칙 제1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 의무화 (2004.7.7) 이후에 참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완공검사증명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 대상물 규모 및 주요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